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77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이인선 · 김기현 · 서지영  
김상훈 · 성일종 · 김장겸  
조은희 · 정동만 · 김성원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법률 제 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채권의 발행) ① ~ ④ (생   략)</p> <p>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lt;후단 신설&gt;</p> <p>⑥·⑦ (생   략)</p>	<p>제18조(채권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 style="text-align: center;">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